

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09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10. 4.
제출자 정영혜 의원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10월 4일 정영혜 의원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최근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및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.
이에 아동학대 실태조사,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지원,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)
- 나.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(안 제7조)
- 다.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라.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,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·운영,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·운영 규정 신설 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- 마.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규정 신설(안 제13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최근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

강화 및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,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지원,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
-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의심아동과 그 가족까지 지원범위를 넓혀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전담인력 배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성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